

【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】

1. 이용정원은 시설 58인으로 한다.
2. 모집방법은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및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【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】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 이라고 한다)에서 대상자에게 발부한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기간이 변경(갱신)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한다.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3.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4. 시설입소 시 본인부담금은 20%로 정한다. 다만, 의료수급 조건에 따라 경감은 12%, 8%, 기초생활수급자는 0%를 적용한다.
5. 1식 3,500원, 1일 간식비 500원으로 한다. (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.)
6. 월수가 금액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.

시설 (2.1:1 / 30일 기준) 본인부담금 20% 기준				
구분	수가	총액	본인부담금	식대
1등급	90,450	2,713,500	542,700	330,000
2등급	83,910	2,517,300	503,400	
3등급	79,240	2,377,200	475,200	
4등급				
5등급				

【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 】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1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 - ①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.)
 - ② 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 -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2. 서비스이용자(시설의 경우 “입소자” 라고 할 수 있다)의 의무
 - ① 월 이용료 납부
 -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 -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 -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 -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 -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3. 보호자의 의무
 -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 -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제반비용 부담
 -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/급여종류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
 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
 - ⑤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

【 계약자의 해지 】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3조 1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
2. 제14조 당사자 간의 계약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서비스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4.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5.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6.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운영 또는 타서비스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7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8. 14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8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